

차별 제소는 다음 기관에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Region IX
Office for Civil Rights
90 7th Street, Suite 4-100
San Francisco, CA 94103-6705
(*Financial & Medical Assistance*)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Director OCR, Room 326-W, Whitten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Phone: (202) 720-5964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OR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Regional Office
90 7th Street, Ste. 10-100
San Francisco, CA 94103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SNAP*)
-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gion IX, Office of Civil Rights
915 Second Avenue, #3310
Seattle, WA 98174-1099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for Civil Rights
810 7th Street, NW
Washington, D.C. 20531
(*Youth Services*)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Civil Rights
451 7th St., SW
Washington, D.C. 20410
(*Housing/HPHA*)

정책 근거

동등 서비스 기회에 관한 기본 정책은 수정된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8;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과, 하와이의 수정 법령체계의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질문

인권서비스국의 시민권 제소 담당자에게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촉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Civil Rights Compliance Office
Queen Liliuokalani Building
P. O. Box 339
Honolulu, Hawaii 96809-0339

전화: 586-4955
TTY(청각장애인): 586-4950
팩스: 586-4990

이메일: gwatts@dhs.hawaii.gov

JULY 2014

DHS 050 KOR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CCESS HAWAII

하와이에 다가가기

당신의 권리와
우리의 책임

시민권 브로셔

다른 양식이 필요하면 이곳으로
연락: 586-4955

Korean

DHS 정책

인적서비스국(DHS)의 정책은 DHS의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인종, 피부색, 출신국, 연령, 장애, 성, 종교와, 연방법과 주법이 수정에 의해서 또는 정기적으로 보호하는 그 밖의 영역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조직 내 부서, 에이전시 전부, 그리고/또는 DHS와의 계약 또는 기타 배치에 의해 주 또는 연방의 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위원회와 조직에 적용됩니다.

주와 연방의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라도 참여가 거부되는 효력이 없도록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차별

차별은 공공연하고 사소한 것 사이에 수많은 형태가 있지만 ‘개인’ 또는 ‘집단’이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하는데 적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서비스 자격 결정에서 개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구분하거나 별도로 대우하여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 것;

- 영어 사용에 한계가 있거나 이를 구사하지 못 하는 사람에게 통역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청각 또는 구음 장애인에게 수화통역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 특정한 집단 또는 개인에게 적대적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장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

직원의 책임

모든 직원은 DHS의 동등 서비스 기회 정책(4.10.3)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모든 개인을 동등하고 친절하게 대우할 것; 그리고
- 사람들에게 동등 서비스 기회,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 자신의 시민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차별 제소의 제기, 그리고/또는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낄 때 제기하는 내부제소 등 그들의 권리를 알릴 것.

동등 서비스 접근 제공에 관한 DHS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직원은 누구나 해당 단체협약 합의에 의하여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프로그램 담당관들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언어, 문화, 그리고 물리적 접근성 필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내용을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관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 필요에 적합하도록 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도 있습니다.

감독자들은 그들의 실무자들이 민원인들을 동등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며,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자들은 민원인들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차별 제소 절차

보호받는 분야에 근거하여 자신이 차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차별대우주장 제소(DHS 양식 6000 & 6006)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 재판권이 있는 제소는 기한 이내에 적절한 연방과 주 당국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공식 차별대우주장 제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ersonnel Office
Civil Rights Compliance Staff
P.O. Box 339
Honolulu, Hawaii 96809-0339

이메일: gwatts@dhs.hawaii.gov
팩스: (808) 586-4990